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5카기2048 증거보전

신 청 인

1. [Redacted]
2. [Redacted]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중~~민)

피 신청 인

대한민국

(소관청 : 서울지방경찰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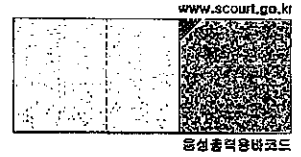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피~~쇄화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2015. 4. 18. 13:30부터 22:40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 테이프, 녹음테이프, 디지털 파일,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2015. 4. 18. 13:00~13:30 및 22:40~24:00) 부분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 시각에는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CCTV 영상을 공개 송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증명할 사실과 무관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신청인들은 2015. 4. 16. 신청 부분은 2015. 4. 29.자 보정서로 이를 취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30.

판 사 송 증 호